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494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수경, 김재인, 정우일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8. 4. 14. 접수 제8254호,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6. 11. 접수 제13010호,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8. 6. 11. 접수 제1301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임대호

부 동 산 의 표 시

1. 경기도 양평군		전	1022㎡
2. 경기도 양평군		전	605㎡
3. 경기도 양평군		전	529㎡

(이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관할,  소유)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수개의 금융기관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른 바 다중채무자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10개 금융기관{(주)D [], (주)E [], (주)F [], (주)G [], 중소기업은행, H [](주), I [](주), J [](주), K [](주), L [](주)}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수하여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단법인 M []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주채무자 소외 C []의 채권양도일 당시 카드(대출)금 채무내역은 채권양도일 당시의 원금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으며, 소외인이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채권양도 금융기관은 2003. 10. 24. N []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N [] 주식회사는 양수한 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양도금통기관	E	G	O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		
미상환원금	금4,859,047원	금105,387원	금707,877원
양도일 이후 지연손해금(연17%)	금13,988,331원	금303,390원	금2,037,851원
미상환채권합계금	금22,001,883원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양도사실을 소외인에게 통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소외인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472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 후 확정되었습니다.

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피고와 소외인은 근저당권자는 피고, 근저당권 설정자는 소외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8.04.14. 접수 제 8254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에 대하여 1996.06.11. 접수 제13010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 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8.06.11. 접수 제 13010호 로서 채권최고액을 각 1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3은 공동담보이나 전산 이차신탁에서 접수일이 오기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에 대하여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법에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68다2334 판결, 2006다33364 판결 참조)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채권자는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청외인의 양수 채권자로서 현재 신청외인은 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물구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채권자는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자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근저당권의 소멸에 의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결치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